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시부터 즉시</b>	<b>배포</b>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(02-2100-2680)	<b>담 당 자</b>	류성재 사무관(02-2100-2693) 차영호 사무관(02-2100-2683)	
	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박 권 추(02-3145-7700)		홍순간 팀 장(02-3145-7725) 최 상 팀 장(02-3145-7710)	

## 제 목 :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조치

□ 금융위원회(위원장 임종룡)는 2017. 4. 5.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**대우조선해양(주)**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**안진회계법인**에 대하여 각각 **45억원, 16억원의 과징금 조치**를 하였음

※ **대우조선해양(주)**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와,  
안진회계법인에 대한 **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** 및  
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**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** 등의 조치는  
2017. 2. 23. 임시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 정은보)에서 既의결하였음

□ 또한, 대우조선해양(주)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일부 업무정지 12월 조치를 의결하였음

### ※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개요

- ▶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 금지
- ▶ 신규 감사업무 금지 대상기업 :
  - ① 주권상장법인(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) : 감사차수 1~2년차 회사는 제외
  - ②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'지정'하는 회사
  - ③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상 금융기관

※ 대우조선해양(주)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('17.2.23. 임시 제1차) 심의·의결 내용은 '17.2.24. 보도참고자료 <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>를,

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('17.2.23. 임시 제1차 및 '17.3.24. 임시 제2차) 심의·의결내용은 '17.3.24. 보도참고자료 <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>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홍재민	*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 <a href="http://www.fss.or.kr">http://www.fss.or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변인</b>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쉽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(붙임)

**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**

(임시 제1차·제2차 증권선물위원회, 2017.2.23., 3.24. 의결)  
(제6차 금융위원회, 2017.4.5. 의결)

(회계심사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적사항	조치
<p><b>대우조선해양</b></p> <p>결산기 : 2008.12.31. 2009.12.31. 2010.12.31. 2011.12.31. 2012.12.31. 2013.12.31. 2014.12.31. 2015.12.31. 2016. 3.31.</p> <p>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</p> <p>업종 : 강선건조업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매출액·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·부채 과대·과소계상 (‘08.12말: 202,921백만원, ‘09.12말: 589,180백만원, ‘10.12말: 697,824백만원, ‘11.12말: 238,771백만원, ‘12.12말: 753,054백만원, ‘13.12말: 1,771,500백만원, ‘14.12말: 2,919,646백만원, ‘15.12말: 485,696백만원, ‘16.3말 68,495백만원)</p> <p>-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·조작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하였으며, - 선박의 납기 지연 및 중량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(LD)을 계약가에서 차감 반영하지 않거나, - 선주사로부터 거절통보된 공사변경(Change Order)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가에 증액 반영하였고, -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재무제표 작성 승인일 이후 선주사와 합의된 공사변경 등을 부당하게 계약가에 증액 반영하여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, -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(과소)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(과소)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(과소)계상함</p> <p>②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(‘12.12말: 75,940백만원, ‘13.12말: 476,648백만원, ‘14.12말: 506,033백만원, ‘15.12말: 123,082백만원)</p> <p>-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장기성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거나, 과거 발생한 손상을 ‘15년에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함</p> <p>③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(‘13.12말: 9,818백만원, ‘14.12말: 322,118백만원, ‘15.12말: 287,060백만원)</p> <p>-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하거나, 과거 발생한 손상을 ‘15년에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함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p>- 과징금 4,545백만원</p> <p>※ 대우조선해양(주)에 대한 기타 조치내역은 임시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(2017.2.23. 의결) 보도참고자료 참고</p>

회사명 등	지적사항	조치
<p><b>대우조선해양</b></p>	<p>④ 이연법인세자산 등 관련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(‘15.12말: 243,475백만원)</p> <p>- 향후 환급될 가능성이 높은 기납부법인세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과소계상하였고, -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이미 인식하고도, 동 손실을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여 진행률이 과소계상되는 등 -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⑤ 지연배상금 주석미기재(‘12.12말: 93,828백만원)</p> <p>-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공기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관련 내역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여야 함에도 공시를 누락함</p> <p>⑥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</p> <p>- ‘09.3.24~‘16.12.13. 기간 중 증권(채무증권 및 지분증권) 발행을 위해 제출한 8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9기(‘08.1.1.~‘08.12.31.)부터 제16기(‘15.1.1.~‘15.12.31.)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</p> <p>[2008.12.31.] 당기순이익 401,728 → 198,807 자기자본 2,067,867 → 1,864,946</p> <p>[2009.12.31.] 당기순이익 577,504 → 266,708 자기자본 3,257,579 → 2,743,862</p> <p>[2010.12.31.] 당기순이익 780,132 → 1,114,856 자기자본 4,043,234 → 3,864,241</p> <p>[2011.12.31.] 당기순이익 743,177 → 649,110 자기자본 4,527,029 → 4,288,258</p> <p>[2012.12.31.] 당기순이익 137,026 → △421,290 자기자본 4,525,861 → 3,728,774</p> <p>[2013.12.31.] 당기순이익 251,718 → △1,209,162 자기자본 4,758,772 → 2,500,806</p>	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대우조선해양주	<p>[2014.12.31.]</p> <p>당기순이익 71,953 → Δ1,210,898</p> <p>자 기 자 본 4,799,140 → 1,258,323</p> <p>[2015.12.31.]</p> <p>당기순이익 Δ3,527,173 → Δ2,387,858</p> <p>자 기 자 본 232,849 → 306,555</p> <p>[2016. 3.31.]</p> <p>당기순이익 26,727 → 13,401</p> <p>자 기 자 본 255,088 → 201,993</p>	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대우조선해양주	<p><b>【감사인】</b></p> <p>① 매출·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 ('10.12말: 697,824백만원, '11.12말: 238,771백만원, '12.12말: 753,054백만원, '13.12말: 1,771,500백만원, '14.12말: 2,919,646백만원, '15.12말: 485,696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행예산(회계추정치) 및 지연배상금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실행예산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매우 부실하게 수행하였으며,</li> <li>- 공사변경(Change Order)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에 대한 회수가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,</li> <li>- 과거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 검토 및 회사 재무제표 재작성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 등을 부실하게 하였음</li> <li>- 특히, '13년 및 '14년 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실행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하여,</li> <li>- 회사가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(과소)계상 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</li> </ul> <p>②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 ('12.12말: 75,940백만원, '13.12말: 476,648백만원, '14.12말: 506,033백만원, '15.12말: 123,082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TMT 등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선사들에 대한 장기성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설정액이 아님을 알고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하거나,</li> <li>-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시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,</li> <li>- 회사가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(대손상각비)를 과소(과대)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</li> </ul>	<p><b>안전회계법인 :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부업무정지* 12월</li> <li>- 과징금 1,600백만원</li> <li>* 주권상장법인,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,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상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 금지</li> <li>※ 안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타 조치내역은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(2017.3.24 의결) 보도참고자료 참고</li> </ul>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대우조선해양(주)	<p>③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(‘13.12말: 9,818백만원, ‘14.12말: 322,118백만원, ‘15.12말: 287,060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손상사유가 발생 Pangea, DeWind 등의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 부서 직원의 설명에만 주로 의존하는 등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,</li> <li>-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시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,</li> <li>-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(과대)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음</li> </ul> <p>④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‘15.12말: 243,475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납부법인세 환급가능성 및 이월결손금 공제율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,</li> <li>- 평가손실을 인식한 재고자산의 실행예산 반영 부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,</li> <li>- 회사의 당기순손실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</li> </ul> <p>⑤ 지연배상금 주석공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‘12.12말: 93,828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공기지연 등에 따른 지연 배상금과 관련하여 회사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,</li> <li>- 회사가 지연배상금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공시 누락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</li> </ul>	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대우조선해양(주)	<p>⑥ 비감사용역 제공(독립성 위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감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따르면, 감사인은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또는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,</li> <li>- 회사와 관련된 회계자문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독립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 <p>⑦ 거짓 자료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감독원의 감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, 수행한 감사절차와 다른 내용을 부당하게 편철하여 위·변조한 감사조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</li> </ul>	

**※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**

업무정지

-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법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

과징금

-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**舊**증권거래법,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1건당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